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지침안

1. 제정이유

○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, 기준,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O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(안 제2조)
- O 휴대용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규정(안 제4조)
- O 휴대용 보호 장비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운용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 정(안 제5조 및 제6조)
- O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 등 지정에 관항 사항을 규정(안 제7조)
- O 휴대용 보호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8조)
- O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0조)
- 민원 처리 담당자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증거물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2조)
-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이외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과 영상기 록의 관리에 이 지침을 준용(안 제14조)

3.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지침안

붙임과 같음

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지침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, 기준,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휴대용 보호장비"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.
- 2. "휴대용 영상기록 장비"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(음성 포함)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.
 - 가.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
 - 나. FullHD급(1920×1080) 해상도 이상
 - 다. 녹화 시야각 120 ° 이상
 - 라.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
 - 마.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

- 3. "휴대용 음성기록 장비"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.
 - 가. 음성의 녹음
 - 나.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
 - 다.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
- 4. "영상기록"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 물을 말하며, "음성기록"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 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.
- 5. "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"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·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·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.
- 6. "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"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·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각급법원, 법원행정처, 사법연수원, 사법정책연구원, 법원공무원교육원,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(이하 "각급기관"이라 한다)이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.
- 7. "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" 란 영상기록, 음성기록 및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·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.
- 8. "시스템 관리자" 란 휴대용 보호장비를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·관리하는 자를 말하며, 제7조의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담당공무워을 말하다.

- 9. "위법행위" 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욕설·협박·성희롱 등의 폭 언과 위협·폭행 또는 민원 처리부서의 기물파손 행위를 말한다.
- 제3조(권익보호)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,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 -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2장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

- 제4조(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)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
 - 2.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위법행위를 할 징후가 있고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 - 가. 위법행위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나. 증거보전의 필요성 또는 긴급성이 있는 경우
- 제5조(사용자 준수사항 등)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. 다만,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

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- 2.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용 보호장비 정 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·저장
- 3.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·저장 금지
- 4.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 · 삭제 금지
- 5.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 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, 녹화제목(녹음제목), 녹화일(녹음일), 녹화 내용(녹음내용)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
- 6.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7조의 입·출고 담당공무원에 게 반납
-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- 1. 영상·음성의 녹화·녹음,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
- 2.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 · 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
- 3.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전 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
- 4.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·관리
- 제6조(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)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
 - 2.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

- 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은 삭제할 것
- 3. 기관 내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
- 제7조(관리책임자 및 입·출고 담당자 지정)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관리책임자: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부서의 장
 - 2. 관리 부책임자: 시스템 관리자
 -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·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관리 부책임자를 입·출고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·출고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.

제3장 기기관리 및 보안 등

- 제8조(휴대용 보호장비 관리)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,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9조(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)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은

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시스템 관리자만 접속
- 2.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
- 제10조(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)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(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 포함)를 갖추어야 한다.
 -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고소, 고발 등(이하 "법적조치등" 이라 한다)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, 법적조치등을 하지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적조치등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 기록을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해당기간은 예외로 한다.
 - ③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설계하고, 각급기관에서 관리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④ 시스템 관리자는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에 관리번호를 부여 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⑤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,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은 별지 제 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, 최소 3년간 보관한다.
 - ⑥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·갱신하여야 한다.
 - ⑦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·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장 기록물 관리 및 교육

- 제11조(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) 민원인이 영상기록 및 음성기록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「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25조를 준용한다.
- 제12조(영상·음성기록 증거물 작성) ① 민원 처리 담당자가 영상기록 또는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음성파일을 CD,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, 장소, 민원처리담당자 성명,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.
 -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사용자 교육) ①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내용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, 사용지침,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②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기타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의2에서 정한 "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" 중 이 지침에서 정한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이외의 장비의운용 및 이를 사용하여 녹화한 영상기록의 관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지침을 준용한다.
- 제15조(위임사항)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각급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영상(음성)기록 증거물 관리 현황

	관리번호		영	관리책임자					
연번		기록일시	기록장소	민원처리 담당자	삭제일	삭제자	부	정	비고
	2000-1								

휴대용 보호장비 입・출고 현황대장

Au	일자	일련 번호	사용자		0.5	출고	담당자	입고	담당자
연번			직급	성명	용도	시각	확인	시각	확인

휴대용 보호장비 등록대장

	익려	_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	제잔	제작 -= 2		관리 책임자			관리 책임자		비고	
연번	일련 번호	모델명	제작 회사	제작 번호(S/N)	번호(S/N) 능독	등록일	부	정	해지일	부	정	비고 (해지 사유 등)

시스템관리자 지정 및 해제 관리대장

연번	지정일	일련번호	제작 번호(S/N)	관리책임자	시스템관리자	해지일	비고 (해지 사유 등)

〈의안 소관 부서명〉

법원행정처 자	판사무국 종합민원과
연락처	(02) 3480 - 1143